

2025년도 『청년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모집 공고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신규 청년일자리창출에 기여한 도내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선정하여 근로환경개선비를 지원하는 『청년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해당 기업을 모집 공고합니다.

2025. 4. 18.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1. 모집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본사(지사*) 및 공장이 관내 소재한 기업으로, 공장 등록 후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 단, 경북도내 및 타 지자체 이전 기업일 경우, 본사(지사*) 및 공장의 전체 가동이력 포함
 - * 사업장이 지사인 경우 지사 내(경북 내) 고용창출이 있는 경우로 한함
예) 가동년수(10년): 청도군 9년수 + 김천시 1년수
가동년수(5년): 경기도 4년수 + 안동시 1년수
 - ※ 공장등록기업 또는 제조시설 면적이 500㎡ 미만인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상 공장 또는 제조업소가 표기된 기업
- 전년도 12월말 대비 고용수준 (인원)증가가 있으면서, 2025년 신규 청년고용실적*이 우수한 기업
 - * 단, 구미시의 경우 신규채용청년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구미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 전년도 12월말 기준 종사자 수가 10인 이상인 중소기업
 - ※ 시군별 배정기업 수 및 사업비 한도 내에서 심사대상 여부 판단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심사 및 지원여부 결정
 - ※ 1기업-1지원: 다수의 사업자등록을 가진 법인사업자는 유리한 1개의 사업장만 지원

시군명	지원기업 수	시군명	지원기업 수
김천시	2	경산시	5
구미시	4	의성군	1
영주시	1	청송군	1
영천시	3	영덕군	1
상주시	1	칠곡군	4
문경시	1	울진군	1

※ 신청기업 고용실적에 따라 지원기업 수 및 지원 예산이 유동적이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

○ 평가항목

- 정량적 평가(매출액, 가동년수, 고용성장률, 종업원수)가 양호한 기업
- 정성적 평가(사업목적, 실현가능성, 신규채용 근로자 장기채직 가능성, 기업복지 및 정부지원정책 참여 등)
- 가점(노사문화 개선 프로그램 지원, 고졸청년 신규채용)

○ 대상업종: 제조업(제조·생산시설을 갖춘 기업) * 공장등록증 확인

《선정(신청) 제외 기업》

-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경상북도 (청년)일자리창출 우수기업」,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지원금 수혜기업 및 그밖에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유사 근로환경 개선사업 수혜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N.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생산도급(단순노무도급, 생산기반시설 없는 경우) 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신청일 기준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임금체불, 환경오염 부당노동행위, 불법행위, 민원 야기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동종업체 대비 현저히 낮은 임금수준, 근무환경 열악 등 심의위원 다수가 우수기업으로 선정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업
- 기타 다음에 해당하는 업체
 - 근로자 파견 및 공급업체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2. 지원내용: 신규 청년 채용인원에 따른 차등 지원

※ 시군별 예산 사정에 따라 최대 지원금이 기준표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 필요

- 청년(19~39세)(단, 외국인근로자는 포함하지 않음)
- 신규청년채용인원에 따른 지원기준
 - 1인 이상 ~ 2인 이하 : 10백만원(단, 50인 이하 소규모 기업)
 - 3인 이상 ~ 4인 이하 : 20백만원
 - 5인 이상 ~ 6인 이하 : 30백만원
 - 7인 이상 : 40백만원(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 근로자 복지시설 개보수 및 물품구입 지원(단, 물품구입 시 지원 금액의 50% 초과 불가)
 - 휴게실, 기숙사, 체력단련실, 목욕시설, 화장실, 구내식당 등 근로환경개선 시설 설치 및 개보수 비용 지원
 - 냉난방기, 운동기구, 냉장고, 세탁기, 공기청정기 등 기숙사·휴게실·식당 등 근로자 복지시설 내 근로환경개선 물품 지원

※ 근로환경개선사업 세부 지원내용

가. 시설 개보수 지원: 휴게실, 기숙사, 체력단련실, 목욕시설, 화장실, 구내식당 등 노후화로 인한 근로환경개선 시설 설치 및 개보수 비용 지원

나. 물품구입 지원: 냉난방기, 운동기구, 냉장고, 세탁기, 공기청정기 등 기숙사, 휴게실, 식당 등 근로자 복지시설 내 근로환경 물품구입 비용 지원

- 단, 물품구입만 지원하는 것은 불가하며 지원금액의 50% 초과 불가
 - * 자가인 경우 시설 개보수 + 물품구입 지원(물품구입만 지원 불가능)
 - * 임대사업장은 물품구입만 지원 가능
- 물품 및 한도액 설정(초과금액 기업부담, 아래 물품 이외 구매 불가능)

• 냉난방기	1개당 3,500천원 이내	• 세탁기	1개당 1,000천원 이내
• 운동기구	1개당 1,500천원 이내	• 건조기	1개당 1,500천원 이내
• 안마기기	1개당 2,500천원 이내	• 공기청정기	1개당 1,000천원 이내
• 냉장고(업소용 기준)	1개당 1,800천원 이내	• 소파(4인기준)	1개당 700천원 이내
• 냉장고(가정용 기준)	1개당 1,000천원 이내	• 청소기	1개당 700천원 이내
• TV	1개당 1,300천원 이내	• 커피머신	1개당 700천원 이내
• 에어컨(벽걸이형 기준)	1개당 1,000천원 이내	• 비데	1개당 400천원 이내
• 에어컨(천장형 기준)	1개당 1,500천원 이내	• 컨테이너(휴게실용도)	1개당 8,000천원 이내

다. 유의사항: 지원시설 및 물품 등은 최소 3년간 유지하여야 함

- 노사 간 화합과 직원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노사문화 개선 지원

※ 5인 이상 청년 신규채용 기업 한정, 사업비 20% 한도 내 편성

- 노사문화 개선 프로그램(단합대회, 워크숍 등) 지원

3.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2025. 4. 18.(금) ~ 2025. 5. 30.(금)
- 접 수 처: 홈페이지(일자리창출우수기업.kr) 신청
- 신청서류: 청년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붙임】1부
 ※ 신청서식: 경상북도경제진흥원(gepa.kr) 및 홈페이지(일자리창출우수기업.kr) 참조
- 문 의 처: 일자리창출팀(054-470-8567)

4. 사업선정

- 신청서(사업계획서) 제출 후 서류검토, 현지실사 및 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

구분	내 용		
서류검토	• 사업대상 적격여부(신청자격 기본 요건, 노동관련 위반사항, 기업 소재지 등) 검토		
현장점검	• 사업계획서 내용 등 사실 여부 및 사업 타당성 현장 확인		
심의위원회 개최	• 제출서류 바탕으로 심의위원 평가		
	구분	평가지표	
	정량적 평가 (40점)	매출액	10점
		가동년수	10점
		고용성장률	10점
		종업원수	10점
	정성적 평가 (60점)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15점
		사업의 실현가능성	15점
		신규채용 청년근로자 장기재직 가능성	15점
		기업복지 자체노력 및 정부정책사업 참여도	15점
합계		100점	
가점 (10점)	노사문화 개선 프로그램	5점	
	고졸청년 신규채용	5점	
※ 평가점수 60점 미만 기업은 선정에서 제외			
선정안내	• 현지 실사 및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 서류 검토: 유선 또는 이메일 통지 － 최종 선정: 선정기업 안내 공문 발송		

5.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신청기업 확인서 1부
- 개인(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신청일 기준·2024년 12월말 기준) 각 2부
-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24) 1부
-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신청일 기준) 각 1부
- 고용환경개선 사업계획서
- 원가계산 검토보고서(1,000만원 이상 시설공사에 한함) ※선정 후 제출
* 원가계산 검토 의뢰 시 별도 비용 발생
- 노사문화 개선 프로그램 계획서(해당 기업만 제출)
- 고등학교 최종학력 증명서(해당 기업만 제출)
- 신규 채용 청년 주민등록등본(구미시에 한함)

6.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정확한 금액 산출을 위하여 견적서 및 비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경북 소재 기업으로 업체 선정
- 사업기간은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하되, 특별한 사유* 발생 시 1개월 이내로 연장가능 단, 사업기간 내 미완료 시 선정취소 될 수 있음 * 경상북도, 해당 시군 및 진흥원이 인정한 경우
- 지원받은 기업은 향후 3년간 동일 사업에 지원할 수 없음
- 허위 또는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업비 전액 환수
- 공사 및 물품 지원 내역이 근로자 공동 사용이 아닌 대표 및 임원, 방문객 등 특정인을 위한 시설·물품일 경우 지원 불가능
- 지원 시설 및 물품은 3년간 유지하여야 하며, 지원목적에 부합

되도록 유지·관리·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업비 환수

※ 예) 휴게실에 비치하였던 안마기를 대표실 등으로 옮겨 사용하는 경우, 에어컨 등 지원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 등

- 상기 유의사항 또는 공고 내용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해석이 상이할 경우는 운영기관의 해석에 따름

7. 기타사항

- 경상북도 청년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센티브 제공

해당부서	지 원 내 용	비 고
청년정책과 (054-880-2763)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우선지원	지정일로부터 2년간
기업지원과 (054-880-2681)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우대 (한도 3억 → 5억원 적용)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기업지원과 (054-880-2693)	벤처기업 육성자금 지원 우대 (한도 2억 → 3억원 적용)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외교통상과 (054-880-2714)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대상 업체 선발 시 우대	선발심사 시 가점 부여
세정담당관 (054-880-2220)	지방세무조사 3년간 유예	지정년도 다음해부터 3년간 유예 적용